

'98 공유재산관리계획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97.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농촌진흥원청사 신축이전 부지내에 차고 및 시험실의 신축에 따른 '98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□ 재산의 취득

<농촌진흥원 시험실 및 차고신축>

- 위 치 : 청원군 오창면 괴정리 277-1(농촌진흥원 이전신축 부지내)
- 규 모 : 1,281㎡ (시험시설 1,016㎡. 차고 265㎡)
- 기 간 : '98 상반기
- 총사업비 : 1,028,184천원 (국비 489,092천원 , 도비539,092천원)

※ 이전신축에 따른 경위

- 부지 매입의 건 (도의회 의결 1993. 12. 16) - 231,406㎡
- 본관. 연구동 건물신축 (" 1994. 12. 30) - 10,248㎡

3. 제안근거

-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
-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9조

4. '98공유재산관리계획서 : 「 별첨 」

5. 관계법령발췌 : 「 별첨 」

공유재산관리계획서

1998년도 관리계획 총괄표(7-1)

[회계명 : 일반회계]

(단위 : m², 천원)

구 분		상 반 기			하 반 기			합 계		
		건수	수 량	금 액	건수	수 량	금 액	건수	수 량	금 액
취득	계	토지								
		건물	1	1,281	1,028,184			1	1,281	1,028,184
		기타								
	매입	토지								
		건물	1	1,281	1,028,184			1	1,281	1,028,184
		기타								
	교환취득	토지								
		건물								
		기타								
기타취득	토지									
	건물									
	기타									
처분	계	토지								
		건물								
		기타								
	매각	토지								
		건물								
		기타								
	양여	토지								
		건물								
		기타								
	교환처분	토지								
		건물								
		기타								
사용 및 대부허가	토지									
	건물									
	기타									

199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(7-2)

[회계명 : 일반회계]

(단위 : m²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추정가액	취 득 시 기	취 득 사 유	취득재산 소유자 주소 . 성 명	비 고
	지목	소 재 지	수 량					
계	토지							
	건물	1 건	1,281	1,028,184				
1	건물	청원군 오창면 괴정리 277-1 (농촌진흥원 신축부지 내)	1,281	1,028,184	상반기	시험시설 및 차고신축	충 청 북 도	농촌진흥원

관 계 법 령 발 취

[지방재정법 및동법시행령]

지 방 재 정 법	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
<p>제77조(공유재산의관리계획)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매년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제84조(공유재산의관리계획)①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.</p> <p>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으로 한다. 이 경우 토지에 있어서는 제2호에 규정된 면적이하 일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때 에는 이를 포함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1건당 예정가격 5억원이상(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 2억5천만원이상)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건물 및 기타재산에 있어서는 과세시가표준액 으로 한다. 2.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만제곱미터 이상(구가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는 5천 제곱미터 이상)

[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및동시행규칙]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	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
<p>제3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① 법 제77조 및 영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, 처분을 하여야 한다.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	<p>제29조(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)① 조례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유재산관리계획서(별지 13호서식) 2 ~ 5 호 생략